

제3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서면회의)

1. 회의일시 : 2011. 6. 10.(금)

2. 장 소 : 방송통신위원회 14층 회의실

3. 참석위원 : 최시중 위 원 장

홍성규 부위원장

김충식 상임위원

신용섭 상임위원

양문석 상임위원 (5인)

4. 불참위원 : 없 음

5. 회의내용

가. 서면회의 사유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면결의)제1항제2호에 따른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안건에 해당됨.

나. 의결사항

1) SK텔레콤(주), (주)KT 및 (주)LG유플러스의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에 관한 건 - (2011-35(서)-117)

○ 무선데이터 서비스 관련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시정명령('10. 12. 2)에 대해 SK텔레콤(주), (주)KT, (주)LG유플러스가 신청한 이행기간 연장(종량제 단일요금 신설 명령 관련)요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7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함.

○ 주요 내용

① 시정명령 이행상황

- SK텔레콤(주), (주)KT 및 (주)LG유플러스는 과징금 납입,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배너' 및 '요금안내' 과금행위 등 중지, 3개월 이내에 이용약관상 비과금 사항 및 대상을 명확히 기재하는 등 업무처리절차 개선은 완료하였으며,

·6개월 이내에 현재의 복수요금과 신설 단일요금 중 하나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은 완료하였고 단일요금 수준의 검토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

②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요청 내용

- 피심인 등은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단일요율을 마련함에 있어 공급 비용 및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해야 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이행기간 1개월 연장을 요청함

③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승인 내용

- 종량제 무선데이터 서비스 단일 요금 수준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이행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의 이행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7개월 이내로 1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함.